

사단법인
韓國知的所有權學會소식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SOCIETY (KIPS) NEWS

창간-1986. 3. 31
등록-1237(1986. 7. 31)

●발행인 : 송상현

●편집인 : 김용환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756-5012
738-4506

저작권법의 시행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

1.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금년 7. 1부터 새로운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그 법이 정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도 가동되게 되었다. 저작권법 제81조 제1항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두가지 큰 역할과 기능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저작권 분쟁의 조정이다. 저작권에 관한 제반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 문공부장관의 책임영역이다. 그러나 저작권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창작에 대한 재산적 보상이라는 차원이 아니



박 원 순
변 호 사

라 문화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문화의 기본법으로 지칭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저작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한 경험

과 지식이 쌓이지 못한 생소한 분야이고 그만큼 시행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공부 내에 저작권문제만을 다루는 저작권과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큰 기능은 조정기능이다. 조정이란 저작권 관련 분쟁